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23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김예지·김소희·박덕흠

김선교 · 김승수 · 강대식

우재준 • 최형두 • 신성범

서천호·조경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최근 규모가 크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크기 360제곱미터, 깊이 20미터 규모의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이어 4월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이 무너져 공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최근 10년 동안 지반침하 사고는 총 2,119건으로, 연평균 211.9건 발생하였음. 사고원인을 보면 대부분 노후 하수관 파손이나 손상, 다짐공사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땅 꺼짐이 서울과 수도권, 전국의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빈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력 및 장비 도입 수준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동법 제12조에 따른 17개 시·도의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수 있다는 규정으로 경상남도가 올해까지도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동법 제11조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의 경우에도 중앙사무로만 되어 있어 지방지하 안전위원회에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기술 및 연구·개발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자문단 및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제3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의2, 제38조의2 및 제43조의2).

법률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를 "지반침하 예방 및 피해복구와 지하안전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 지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장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시·도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4조의2 및 제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2(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제38조의2(지반침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8조의2에 따른 신고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 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지반침하 예방 및 피해복구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 와 지하안전관리에----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 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및 장 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②·③ (생 략) 과 같음)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 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 문) -----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 단체 및 전문 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특</u>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 ·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 •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시 • 도에 시 • 도 지하 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시 · 군 · 구 지하안 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의2(관계 기관 등에의 협 조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안 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 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신 설>

<신 설>

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43조의2(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2에 따른 신고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